머리말 Preface

『형사소송법 I (수사·증거편) 기출총정리』를 출간하면서...

그 동안 과분한 애정과 아낌없는 관심으로 『형사소송법 I (수사·증거편) 기출총정리』 출간을 위해 기대와 응원을 해 준 많은 수험생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22년부터 시험과목이 개편되는 경찰채용과 경찰간부, 해경채용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I (수사·증거편) 기출총정리』를 출간하였습니다. 많은 수험생들로부터 최고의 성원을 받은 『신광은의 한 수 기출총정리 형사소송법』의 틀은 유지하면서 개편된 형사법 출제범위에 맞게 "수사·증거" 파트로 구성하였습니다.

본서에 수록된 기출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필자가 직접 기출문제를 풀어보며 설문을 분석, 재구성하고 적절한 해설을 추가하는 등 학습효과 극대화를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15개년(2009년~2023년) 전 직렬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수록

본 교재에는 최근 시행된 2023년 8월 경찰채용 기출문제를 포함하여 최근 15개년 (2009년~2023년) 동안 출제된 경찰채용 및 승진, 경찰간부와 해경간부 등 경찰직 형사소송법의 모든 기출문제와 법원직·검찰직·교정직, 그리고 소방간부(2016년~2023년) 등 형사소송법의 모든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2 최신 기출문제를 통한 출제경향 파악 및 예상문제에 완벽대비

전 직렬 최신 기출문제를 통해 앞으로의 출제경향 파악은 물론, 과거의 출제경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출제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판단하여 본인의 공부방향을 설정함으로써 다가 올 시험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문제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풍부하고 완벽한 해설

각 문제마다 풍부하고 꼼꼼한 해설을 추가하여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이해하고 혼자 공부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4 회독 및 이해여부 체크기능을 통한 학습효과 극대화

각 문제마다 상단에 "1 2 3"으로 회독 수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험생들이 반복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회독 수를 체크하고, 더불어 문제를 풀고 난 후 오답여부를 ○·× 등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이 정답을 맞혔는지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공부함으로써 학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5 문항별 난이도 표시를 통한 자기주도학습

각 문제마다 번호 하단에 난이도를 ★(하), ★★(중), ★★★(상)으로 표시함으로써 수험생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6 형사법 고득점 및 합격을 가능하게 해주는 필독서

본 교재는 최단기간 내에 한권의 문제집으로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파트의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최고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1) 경찰직, 국가직, 법원직, 소방간부 등 전 직렬의 문제를 빠짐없이 수록하여 모든 직렬의 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문제의 순서는 신광은 형사법 기본서의 진도와 동일하게 배열하여 기본서의 내용을 복습, 정리하고 그 바탕 위에서 실전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각 주제별로 변형된 표현이나 반대 설문들로 구성된 '확인학습' 문제를 추가함으로써 다시 한번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복습,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문제에 대한 상세한 해설은 물론 설문과 관련하여 참고할 사안을 요약 정리하였고, 문제를 통하여 체크하고 암기해야 할 부분을 굵은 고딕체로 강조함으로써 수험생들이 부족한 시간을 이용하여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 한권으로 정복하는 최신, 최적, 최고의 형사법 기출문제집

본 교재는 전직렬의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수록함은 물론 수험생들이 최단기간 내에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풍부한 해설과 정리, 확인학습문제, 회독체크 및 키워드 강조 등 여러가지 형태로 세심한 배려를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법령내용과 시험경향에 크게 맞지 않은 문제들은 제외하거나 변경하였고, 여러 교재에서 발견된 오류 등을 바로 잡았습니다.
따라서 형사법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가장 최적화 된 교재, 최신내용을 포함한 교재, 수험생들의 합격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한 최고의 형사법 기출문제집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서를 통해 모든 수험생들이 형사법 고득점 및 시험 합격이라는 기쁨을 누리길 기원하며, 더불어 힘든 수험기간 동안 건강 유의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Bravo Your Life!!

편저자 신광은

목 차 Contents

PART 01 수사

제1장 수사 ····· 8
-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 8
-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 17

제2장 수사의 개시 ····· 29
- 제1절 불심검문과 변사체 검시 ····· 29
- 제2절 고소 ····· 38
- 제3절 고발 및 자수 ····· 75
- 제4절 수사의 개시 ····· 82

제3장 임의수사 ····· 83
- 제1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 83
- 제2절 임의수사 방법 ····· 95

제4장 강제수사 ····· 118
- 제1절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118
- 제2절 체포 ····· 119
- 제3절 구속 ····· 154
- 제4절 접견교통권 ····· 210
- 제5절 압수·수색·검증·감정유치 ····· 224
- 제6절 통신제한조치 ····· 293
- 제7절 수사상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 ····· 305

제5장 수사의 종결 ····· 314
-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 314
-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327
-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 345

PART 02 증거

제1장 증거 ····· 354
- 제1절 증거법 일반 ····· 354
-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 359
- 제3절 증거능력 관련 문제 ····· 378
- 제4절 증명력 관련 문제 ····· 515

형사소송법 Ⅰ
(수사·증거편)

P·A·R·T

01

수사

Chapter 01 수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1 2 3 (10.경찰승진, 13.경간부, 14.순경1차, 16.경찰승진·소방간부, 17.순경1차, 18.해경승진, 20.순경1차·경찰승진·해경3차, 21.경찰승진)

01 ★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수사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 수사절차는 공판절차와 같이 획일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은 탄력성, 기동성, 임기응변성, 광역성 등 합목적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 수사 이전의 단계를 내사라 하며,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피내사자에게 준용하는 규정을 두는 방법으로 피내사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시작되고, 피내사자의 지위가 피의자의 지위로 바뀜을 규정하고 있다.
㉤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수사의 조건으로 요구되는 이유는 수사가 항상 기본권 침해의 위험을 수반한다는 점에 있다.
㉥ 필요성과 상당성이라는 수사의 조건은 임의수사에는 적용되지 않고 강제수사에만 적용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해설

㉡㉢㉣㉥ : × / ㉠㉤ : ○

× : ㉡ **수사절차는 대상의 다양성과 불예측성을 특징으로 하는 절차로서 공판절차와는 달리 획일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은 탄력성, 기동성, 임기응변성, 광역성 등 합목적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권리를 피내사자에게 준용하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공소제기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시작되고, 피의자의 지위가 피고인의 지위로 변경된다.**
㉥ 수사의 필요성은 강제수사뿐만 아니라 임의수사의 경우에도 조건이 되며, 수사의 상당성은 수사에 대한 한계를 설정해 피의자의 인권침해를 축소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특히 강제수사의 경우에 강조된다.

○ : ㉠ 대법원 98도3329

정답 ③(㉡㉢㉣㉥)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1 2 3 (15.해경간부, 19.순경2차·법학특채)

01 ★ **수사기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가 가장 바르게 된 것은?**

㉠ 사법경찰관리에는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있다.
㉡ 사법경찰관은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함을 그 직무로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수사를 보조함을 그 직무로 한다.
㉢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장의 장은 당해 교도소 등에서 발생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 검찰주사, 검찰주사보로서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은 소속 검찰청에서 접수한 사건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감독관은 그 권한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이다.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해설

모두 옳다.
㉠ 제197조
㉡ 제196조 제1항, 제5항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검찰청법 제47조 제1항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정답 ③

1 2 3 (19.순경2차, 20.해경3차, 21.7급국가·해경2차·해경승진, 23.경찰승진·소방간부)

02 ★★ 수사기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② 일반 경찰공무원인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으며 1차적 수사종결권이 있는 반면 검찰청 직원인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에 대해 수사보조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③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하며,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④ 「공직선거법」상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은 선거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선거범죄에 관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설

④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따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기본권 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소관 업무의 성질이 수사업무와 유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함부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22도8824)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직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하지 않고**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고유의 직무를 수행할 뿐이다.

① 제197조 제1항

② 제197조 제1항, 제245조의9 제2항

③ 제245조의10 제2항

정답 ④

1 2 3 (13.9급개론, 14.경찰승진, 16.경찰승진, 17.소방간부, 18.법학특채, 19.해경승진, 20.소방간부, 23.경찰승진)

03 ★★ 수사기관의 수사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는 일반국민의 정당한 관심대상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에 한정되어야 한다.
㉣ 수사기관은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법경찰관리는 관할구역 외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고, 당해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해설

모두 옳음.
㉠ 제198조 제1항
㉡ 제198조 제2항
㉢ 대법원 97다10215, 10222
㉣ 제198조 제4항
㉤ 제198조 제4항
㉥ 제200조의6, 제83조

정답 ①

확인학습

1 2 3 (12.9급개론, 21.순경2차·해경2차, 23.경찰승진)

10 ★★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중요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검사가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의 송치를 요구할 수 있고 검사의 송치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모두 틀림.
× : ㉠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제197조 제1항)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는다.**
㉡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제198조 제3항)
㉢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제197조의4 제1항)
㉣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제197조의3 제1항) 송치요구는 기록등본의 송부를 받고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가능하다.(제197조의3 제5항)

정답 ④

Chapter 02 수사의 개시

제1절 불심검문과 변사체 검시

1 2 3 (13.9급국가, 15.경찰승진, 16.순경2차, 17.순경2차·경찰승진·해경2차, 18.경찰특공대·경찰승진·해경간부, 19.순경1차·법학특채·경찰특공대·해경1차·해경간부, 20.경찰특공대·해경승진·해경간부, 21.경찰특공대·해경승진·해경간부, 22.경찰승진·해경승진, 23.순경1차·경찰특공대)

01 ★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진정·자수·범죄신고는 타인의 체험에 의한 수사의 단서이나, 불심검문은 수사기관 자신의 체험에 의한 수사의 단서이다.

② 경찰관은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고, 질문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④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해설

④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도7976)

②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1호, 제2항

③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2호

정답 ④

1 2 3 (11.경찰승진, 15.9급개론, 16.순경2차, 17.해경2차, 18.경찰승진·해경승진, 19.순경1차·해경1차, 21.경찰승진·경간·해경승진·소방간부, 22.경찰특공대, 23.경간)

02 ★★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은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②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 불심검문 당시의 현장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피고인이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③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상의 직무질문을 할 당시 경찰복을 입고 있었다면, 상대방이 요구하더라도 경찰관에게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거나 소속과 성명을 밝힐 의무가 없다.

④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는 범인의 체포 등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의 신원 또는 거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정복근무 중인 경우 외에는 미리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해설

③ 피고인은 상해사건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정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직무수행중이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았고, 신분확인 요구도 안했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질문한 것은 직무 수행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 의문이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답변을 거부하면 충분한 것임에도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이상 **경찰관들이 공무원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도4029) 판례에 의하면 상대방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경우에는 신분증 제시를 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

② 대법원 2014도7976

④ 주민등록법 제26조

정답 ③

Ⅴ. 구속의 집행정지 · 구속의 실효

1 2 3 (10.법원, 11.법원, 12.경찰승진, 14.경찰승진, 15.순경1차, 17.북부여경, 18.경찰승진, 20.순경2차·9급개론·해경간부, 21.경찰승진, 22.소방간부, 23.경찰승진)

01 ★ **석방제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 고인을 친족, 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② 구속집행정지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의견을 구하지 아니하고 구속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다.

③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으나,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해설

④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제97조 제4항)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헌가36)
① 제101조 제1항, 제209조
② 제101조 제2항
③ 제93조

정답 ④

1 2 3 (10.순경2차)

02 ★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 취소사유가 아닌 것은?**

① 도망한 때

②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③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석 조건을 위반한 때

④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해설

③ 구속집행정지 취소사유와 보석 취소사유는 동일하다.(제102조 제2항) 다만,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 조건을 위반한 때는 보석 취소사유이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구속집행정지 조건을 위반**한 때가 구속집행정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제102조 제2항 제5호)

정답 ③

1 2 3 (12.해경, 13.경찰승진·법원·7급국가, 20.7급국가)

03 ★★ 석방제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구속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구속의 집행정지 취소사유와 보석 취소사유는 동일하다.

③ 피의자가 구속 당시에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항(구속의 이유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을 고지받지 못하였고, 구금기간 중 면회거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취소사유에 해당한다.

④ 헌법 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법원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하여야 한다.

해설

①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제93조, 제209조, 제200조의6)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청구권자가 아니다.

③ 체포, 구금 당시에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항(체포, 구금의 이유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받지 못하였고, 그 후의 구금기간 중 면회거부 등의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93조 소정의 **구속취소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91모76)

④ 헌법 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되므로**(제101조 제4항), 구속집행정지결정은 필요 없다.
※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헌법 제44조 제2항)

② 제102조 제2항

정답 ②

1 2 3 (12.해경, 20.순경2차·경찰승진·9급개론, 21.경찰승진)

04 ★ 석방제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4항에 따라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 국회의원이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기 중이라도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체포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의자, 변호인과 피의자의 변호인 선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체포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 구속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하므로, 구속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자유형(실형)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구속의 취소 결정을 하여야 한다.

해설

① 구속집행정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행한다. 당사자에게는 신청권이 없으며 설령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제101조 제1항)
②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는 그 **회기 중에는 취소하지 못한다.**(제102조 제2항)
④ 형사소송법 제93조에 의한 구속의 취소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 법원이 직권 또는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이 실효되므로, 구속영장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다른 사유로 이미 구속영장이 실효된 경우에는 피고인이 계속 구금되어 있더라도 위 규정에 의한 구속의 취소 결정을 할 수 없다.**(대법원 99초355, 99도3454) 자유형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할 수 없다.
③ 제200조의6, 제93조

정답 ③

1 2 3 (17.해경간부, 19.해경간부)

05 ★★★ 다음 중 구속의 집행정지와 보석의 공통점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구속영장이 실효되는지의 여부
㉡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보증금을 조건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 피고인에게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검사에게 즉시항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 공통점 / ㉡㉢㉣ : 차이점
공통점 : ㉠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모두 구속의 집행이 정지될 뿐 구속영장이 실효되지 않는다.
㉤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모두 결정에 대해서 보통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제403조 제2항)
차이점 : ㉡ 보석 허가의 결정은 법원만 가능하지만,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는 수사기관(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다.(제209조, 규칙 제55조)
㉢ 보석은 보증금을 조건으로 할 수 있지만, 구속의 집행정지는 보증금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제98조 제8호, 제101조 제1항)
㉣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구속의 집행정지는 직권으로만 가능하다.(제94조, 제101조 제1항)

정답 ②(㉠㉤)

제4절 접견교통권

1 2 3 (10.경찰승진, 11.경찰승진, 13.순경2차, 19.법학특채)

01 ★

접견교통권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접견교통권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 특히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이 변호인이나 가족·친지 등의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는 권리를 말한다.

② 체포 또는 구속당한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은 헌법에서 정해 놓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가 최대한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기본권의 하나이다.

③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재판소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나온다고 볼 것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헌법 제27조 제4항도 그 보장의 근거가 된다.

④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인정되는 권리이지만,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권리라고 할 수 없다.

해설

④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을 조력하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헌법상의 기본권인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과 표리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15헌마1204)

① 제34조 ② 헌법재판소 89헌마181 ③ 헌법재판소 2002헌마193

정답 ④

1 2 3 (11.9급개론, 12.순경3차, 13.순경2차·9급개론, 14.순경1차, 15.순경2차·7급국가, 16.순경1차·경찰승진·9급국가·개론·경간, 17.경찰승진·해경2차, 19.순경2차·법학특채·해경1차, 20.7급국가, 21.해경2차, 22.해경승진, 23.순경1차·경찰특공대·경찰승진·해경승진·변호사)

02 ★★

접견교통권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자신이 가지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는 할 수 없다.

②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에 의한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

③ 수사기관에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피의자에게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이 인정되지만,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에는 그 접견교통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변호인 선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하고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이와 같이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게도 피의자를 접견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견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해설

③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인정이 당연한 전제가 되므로,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이다.**(대법원 96모18)
① 대법원 2000모112
② 대법원 91모24
④ 대법원 2013도16162

정답 ③

1 2 3 (16.경찰승진, 17.경찰승진·법원·경간, 19.법학특채, 20.7급국가)

03 ★★ 접견교통권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접견교통권의 주체는 체포·구속을 당한 피의자이고, 신체 구속상태에 있지 않은 피의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 형사소송법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형이 확정되어 집행 중에 있는 수형자에 대한 재심개시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심청구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③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④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교통할 때 교도관은 보이는 거리에서 수용자를 감시하거나 접견에 참여하여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화할 수 있다.

해설

① 접견교통권은 구속, 불구속을 불문하고 인정된다.(헌법재판소 2000헌마138) 형사소송법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서(제243조의2) **구속, 불구속을 불문하고 변호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을 보장**하고 있다.
②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형이 확정되어 집행 중에 있는 수형자에 대한 재심개시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심청구절차에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96다48831)
④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방해, 감시없는 자유로운 접견교통을 그 본질로 한다. 따라서 **접견시 교도관, 경찰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관찰할 수는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③ 헌법재판소 91헌마111

정답 ③

1 2 3 (12.해경간부, 14.순경1차, 15.순경2차, 17.순경2차·해경2차·해경특채2차, 18.해경승진, 20.경찰승진·경간·해경승진, 23.순경1차)

04 ★★★ 접견교통권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목적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미결수용자 또는 변호인이 원하는 특정한 시점에 접견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② 국선변호인의 접견신청이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불허된 경우라도 그로부터 이틀 후 접견이 이루어지고 다시 그로부터 열흘 넘게 지난 후 공판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교도관이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에 주고받는 서류를 확인하고, 소송관계서류처리부에 그 제목을 기재하여 등재한 행위는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이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④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 자체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도 법률로써 제한될 수 없다.

해설

④ 헌법재판소가 91헌마111 결정에서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 대해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구속된 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접견'**, 즉 '대화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고 어떠한 제한, 영향, 압력 또는 부당한 간섭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접견'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지, 변호인과의 접견 자체에 대해 아무런 제한도 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 역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헌법재판소 2009헌마341)

①② 헌법재판소 2009헌마341

③ 헌법재판소 2015헌마243

정답 ④

Chapter 01 증거

제1절 증거법 일반

1 2 3 (18.해경승진)

01 ★ 다음 중 증거방법이 아닌 것은?

① 피고인의 진술
② 의사의 상해진단서
③ 공판조서
④ 증거물인 서면

해설

① 증거방법은 증거로 사용되는 유형물 자체 즉 증거조사의 대상물을 말하고, 증거방법을 조사하여 얻어진 내용은 증거자료라고 한다. **피고인의 진술은** 증거방법인 피고인을 조사하여 얻어진 내용이므로 **증거자료**에 해당한다.
②③④ 증거방법에 해당한다.

정답 ①

1 2 3 (12.경간, 19.해경간부, 20.경찰승진, 21.경찰승진, 23.해경간부)

02 ★ 증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증거방법과 증거자료를 구분할 때, 상해진단서·증거물인 서면·증인의 증언은 증거방법에 해당한다.
② 간접증거와 직접증거의 구분은 증거법정주의보다는 자유심증주의에서 더욱 의미를 갖는다.
③ 증거능력이란 요증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의 힘,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말하며, 이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해 결정된다.
④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해설

① 증거방법은 증거로 사용되는 유형물 자체, 즉 증거조사의 대상물을 말하고 증거자료는 증거방법을 조사하여 얻어진 내용 그 자체를 말한다. 상해진단서와 증거물인 서면은 증거방법에 해당하지만, **증인의 증언은 증거자료에 해당한다.**
②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하는 **자유심증주의에서는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의 증명력의 우열이 없기 때문에**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의 구별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제308조)
③ 증거능력은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이며, 미리 법률에 의해 형식적으로 결정되어 있고, **증명력**은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의미하며,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겨져 있다.(헌법재판소 93헌바45)
④ 대법원 2008도8486

정답 ④

1 2 3 (12.경간, 19.해경간부)

03 ★ 증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u>틀린</u> 것은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의 분류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 따른 분류이다.
㉡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지문은 간접증거이다.
㉢ 범죄현장을 목격한 진술은 직접증거이면서 본래의 증거이다.
㉣ 피고인의 옷에 묻은 혈흔은 직접증거에 해당하나, 상해진단서 등은 간접증거에 해당한다.
㉤ 절도사건에서 피고인이 장물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의 증언은 직접증거에 해당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 × / ㉠㉡㉢ : ○
× : ㉣ 피고인의 옷에 묻은 혈흔과 상해진단서 등은 **간접증거**에 해당한다.
㉤ 절도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절취하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의 증언은 직접증거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이 장물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의 증언은 **간접증거**에 해당한다.
○ : ㉡㉢ 목격자의 증언은 직접증거에 해당하지만, 범죄현장에서 채취된 지문은 간접증거이다.

정답 ②(㉣㉤)

1 2 3 (09.9급국가, 12.경간, 18.9급국가, 20.순경1차·경찰승진)

04 ★ 증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u>틀린</u>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유죄의 심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다.
②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 어려운 범죄의 경우에 법원은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목적범의 목적은 내심의 의사로서 이를 직접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고의 등과 같이 내심의 의사를 인정하는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정황사실 또는 간접사실 등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④ 범죄사실의 증명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되는 한 간접증거로도 할 수 있으나,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는 직접증거가 있어야만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해설

④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고**, 살해의 방법이나 피해자의 사망경위에 관한 중요한 단서인 피해자의 사체가 멸실된 경우라 하더라도 간접증거를 상호 관련하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살인죄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도10754)
① 대법원 2008도8486
② 대법원 74도1519
③ 대법원 2010도1189 전합

정답 ④

1 2 3 (13.9급국가, 15.법원·7급국가· 경간, 17.9급국가, 18.해경2차·해경승진, 19.순경2차·해경1차, 20.순경2차·법학특채·경간·법원·해경3차, 22.법학특채·경간·해경승진·해경간부, 23.법학특채·경찰승진)

02 ★ 증거재판주의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구성요건 사실은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서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하여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함에 있어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③ 법원은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법률상 규정된 형의 가중·감면의 사유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이 규정한 증거로서의 자격이나 증거조사방식에 구애됨이 없이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인정할 수 있다.

④ 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인 경우에 그 주요사실이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면 보조사실도 엄격한 증명을 요하게 되며, 증거의 증명력을 탄핵하는 보조사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해설

④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명백하다.(대법원 97도1770)
① 대법원 2008도7112
② 대법원 2011도6507
③ 대법원 2010도750

정답 ④

1 2 3 (20.순경1차·9급국가·개론·법원·7급국가·해경1차, 21.소방간부, 22.9급국가·개론, 23.순경2차)

03 ★ 증거재판주의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형사재판에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 모두가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범죄의 성격상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엄격한 증명을 통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②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고,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일죄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③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에게 증명의 책임이 있음이 원칙이나, 전파될 가능성은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이므로 그 증명의 정도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④ 내란선동죄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은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므로 확정적 인식임을 요한다.